

# 삼척시자치법규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193
--------	--------	-----

제출년월일 : 1995. . . .

제 출 자 : 삼 척 시 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95. 7. 1 공포 (대통령령 제14703호)됨에 따라 「삼척시 자치법규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법규를 공포하는 방법은 시보에의 게재로하며,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한다 (안 제7조)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포하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시보가 발행된 날로하여,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삼척시 자치법규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자치법규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공포방법)중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공포, 공고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를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로 한다.

제8조 (공포일등) ①항중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한다"를 "시보가 발행된날로 한다, 다만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등은 <u>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공포, 공고 또는 고시하여야한다.</u></p>	<p>제7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등은 <u>시보에의 게재로써한다. 다만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u></p>
<p>제8조 (공포일등) ① 자치법규등의 공포일과 고시일은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u>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된 날로 한다.</u></p>	<p>제8조 (공포일등) ① ----- ----- <u>시보가 발행된 날로한다. 다만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u></p>